



화장품 표시·광고 준수사항 및 감시 사례

2025. 5. 13.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 화장품 포장의 기재사항

2. 화장품 표시·광고

서울청 화장품 감시체계

2025년 바이오생약국 소관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수립

[본부 화장품정책과]

지방청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정기감시

[화장품제조업자] 3년에 1회 실시하되, 화장비누 공방은 제외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국민신문고 민원 등에 따른 수시 감시로 대체

수시/기획 감시

고발·진정·제보·신고 및 정보사항 등
본부(화장품정책과, 사이버조사팀) 점검
지시 등

품질 감시

>> 유통 화장품의 품질감시
- 국내 유통 화장품
- 해외직구 화장품

화장품 포장의 기재사항

화장품의 기재사항

「화장품법」제10조,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

1. 화장품의 기재사항은 1차 포장과 2차 포장에 모두 기재 · 표시하여야 한다.
2. 1차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 표시하여야 한다. (고형비누 제외)
 -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제조연월일 병행표기)
 - * 이때 영업자의 상호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화장품제조업자를 말함
3.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 (10g 이하 & 10ml 이하, 비매품(견본품))의 경우
 -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만을 기재 · 표시할 수 있다.
 - * 화장품제조업자 상호 제외 가능
4.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초과 50밀리리터 이하 또는 중량이 10그램 초과 50그램 이하 화장품은 아래 성분을 제외한 전성분의 기재·표시를 생략 가능
 - 타르색소, 금박,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류, 과일산(AHA),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 ·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용 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
5. (3번, 4번 관련) 소비자가 사용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장품의 성분은 제외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 * 외음부 세정제,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화장품 포장의 기재사항

화장품의 기재사항

「화장품법」제10조,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

6. 총리령에서 정하고 있는 성분 함량 표시

-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품은 제외한다)
- 인체 세포 · 조직 배양액이 들어있는 경우 그 함량
- 화장품에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표시 ·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원료의 함량
-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을 특정하여 표시 · 광고하려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기준이 지정 · 고시된 원료 중 보존제의 함량

7.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의 기재 · 표시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생략된 성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소비자가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모든 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을 것
-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추어 둘 것

8. 화장품의 유형에 따른 기재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화장품 포장의 기재사항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9.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 등을 하려는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보고서나 심사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 · 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얇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脫染) · 탈색(脫色)을 포함한다]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한다.
-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
- 피부장벽(피부의 가장 바깥 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를 말한다)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얇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화장품 표시·광고 감시

화장품 해당 여부 판단

화장품이란?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하며,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은 제외

→ 화장품의 해당 여부는 그 사용목적, 효능·효과, 사용방법 등을 고려해야

화장품 표시·광고 감시

감시 기준

- 고발·진정·제보 등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제기된 위법사항에 국한하여 감시 실시

바이오생약국 제조·유통관리기본계획

- **화장품의 표시·광고 위반 여부의 판단**은 화장품으로서의 효능이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명칭,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효과, 용법·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광고가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에 따라 **광고의 전반적인 맥락을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

대법원 판례93도271

화장품 표시·광고 감시

★ 2025년 바이오생약국 소관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사)대한화장품협회의 사전자문을 받은 광고 내용이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영업자에 행정처분을 갈음하여 1차로 '시정조치' 기회 부여*하고
추후 동일 내용으로 반복 적발 시 행정처분 진행

화장품 표시·광고 관련 규정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①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2.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3.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② 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표시·광고의 범위 등)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표시·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

- **화장품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2조, 제23조, 별표 5**와 관련하여, 화장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의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금지표현의 예시와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자료 요청에 관한 주요 대상을 정함

화장품 표시·광고 관련 규정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화장품 표시 · 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제22조 관련)

2. 화장품 표시 · 광고 시 준수사항

- 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나.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의·약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화장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하여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래 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고, 연구자 성명·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화장품 표시·광고 관련 규정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화장품 표시 · 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제22조 관련)

2. 화장품 표시 · 광고 시 준수사항

- 사.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를 하지 말 것
- 아. 품질 · 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 · 광고를 하지 말 것
- 자.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 · 도안 · 사진 등을 이용하는 표시 · 광고를 하지 말 것
- 차.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표시 · 광고를 하지 말 것
- 카.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이 되는 표시 · 광고를 하지 말 것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제1호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2. 화장품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

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 [별표 1] 화장품 표시·광고의 표현 범위 및 기준

구 분	금 지 표 현				비고
질병을 진단·치료·경감 ·처치 또는 예방,	· 아토피 · 소양증 · 이뇨 · 근육 이완 · 찰과상, 화상 치료·회복 · 관절, 림프선 등 피부 이외 신체 특정 부위에 사용하여 의학적 효능, 효과 표방 · 기저귀 발진	· 모낭충 · 살균·소독 · 항암 · 통증 경감	· 심신피로 회복 · 항염·진통 · 항진균 · 면역 강화, 항알레르기	· 건선 · 해독 · 항바이러스 · 항알레르기	
의학적 효능·효과 관련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제1호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 [별표 1] 화장품 표시·광고의 표현 범위 및 기준

구 분	금 지 표 현	비고
질병을 진단·치료·경감 ·처치 또는 예방, 의학적 효능·효과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드름	단,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 표현 또는 [별표2] 1.에 해당하는 표현은 제외 -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에 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미, 주근깨(과색소침착증)	단, [별표2] 1.에 해당하는 표현은 제외 - 기미 주근깨 완화에 도움(미백 기능성화장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균	단, [별표2] 1.에 해당하는 표현은 제외(인체세정용제품에 한함) * 액체비누에 대해 트리클로산 또는 트리클로카반 함유로 인해 항균 효과가 '더 뛰어나다', '더 좋다' 등의 비교 표시·광고는 금지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제1호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 [별표 1] 화장품 표시·광고의 표현 범위 및 기준

구 분	금 지 표 현	비고
피부 관련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임신선, 튼살피부 독소를 제거한다(디톡스, detox)상처로 인한 반흔을 제거 또는 완화한다.가려움을 완화, 개선, 해결한다.	<p>단,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 표현은 제외</p> <p>*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된 '효능효과' 표현은 제외</p> <p>* 보습을 통해 피부건조에 기인한 가려움의 일시적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제외(단, '보습'과 '일시적'인 경우에 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의 흔적을 없애준다.<예시> 여드름, 흉터의 흔적을 제거	단, (색조 화장용 제품류 등으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홍조, 홍반을 개선, 제거한다.뾰루지를 개선한다.	'가려준다'는 표현은 제외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제1호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 [별표 1] 화장품 표시·광고의 표현 범위 및 기준

구 분	금 지 표 현	비 고
피부 관련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피부노화셀룰라이트붓기·다크서클피부구성 물질(예 : 효소, 콜라겐등)을 증가, 감소 또는 활성화시킨다.	<p>단, [별표2] 1.에 해당하는 표현은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피부노화 완화, 안티에이징, 피부노화 징후 감소, 피부노화지수 감소(인체적용시험자료, N세 감소 불가)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인체적용시험자료)붓기 완화, 다크서클 완화(인체적용시험자료)콜라겐, 효소 증감 또는 활성화(주름완화·개선 기능성화장품으로서 이미 심사받은 자료에 포함되어 있거나 해당 기능을 별도로 실증한 자료로 입증)
모발 관련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발모·육모·양모탈모방지, 탈모치료모발 등의 성장을 촉진 또는 억제 한다.모발의 두께를 증가시킨다.속눈썹, 눈썹이 자란다.	단,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 표현은 제외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제1호

구 분	금 지 표 현	비고
생리활성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혈액순환· 호르몬 분비촉진 등 내분비 작용· 유익균의 균형 보호· 땀 발생을 억제한다.· 세포 활력(증가), 세포 또는 유전자 (DNA) 활성화· 피부재생, 세포 재생· 질 내 산도 유지, 질염 예방· 세포 성장을 촉진한다.	-
신체 개선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이어트, 체중감량· 체형변화· 가슴에 탄력을 주거나 확대시킨다.· 얼굴 크기가 작아진다.· 피하지방 분해· 몸매 개선, 신체 일부를 날씬하게 한다.· 얼굴 윤곽개선, V라인	단, (색조 화장용 제품류 등으로서) '연출한다'는 의미의 표현을 함께 나타내는 경우 제외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제1호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 [별표 1] 화장품 표시·광고의 표현 범위 및 기준

구 분	금 지 표 현	비고
원료 관련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원료 관련 설명시 의약품 오인 우려 표현 사용(논문 등을 통한 간접적으로 의약품 오인 정보제공을 포함)	-
기타	메디슨(medicine), 드럭(drug), 코스메슈티컬, 치유 등을 사용한 의약품 오인 우려 표현	-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제2호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2.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2. 화장품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

- 나.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사.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 [별표 1] 화장품 표시·광고의 표현 범위 및 기준

구 분	금 지 표 현
기능성 관련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기능성 화장품 심사(보고)하지 아니한 제품에 미백, 화이트닝(whitening), 주름(링클, wrinkle)개선, 자외선(UV)차단 등 기능성 관련 표현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또는 기능성 화장품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제2호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2.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2. 화장품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

- 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나.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 [별표 1] 화장품 표시·광고의 표현 범위 및 기준

구 분	금 지 표 현
원료 관련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하지 아니한 제품에 '식약처 미백 고시 성분 OO 함유' 등의 표현기능성 효능·효과 성분이 아닌 다른 성분으로 기능성을 표방하는 표현원료 관련 설명시 기능성 오인 우려 표현 사용(주름개선 효과가 있는 OO 원료)원료 관련 설명시 완제품에 대한 효능·효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제4호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 · 광고 행위 등의 금지)

4.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2. 화장품 표시 · 광고 시 준수사항

다.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약사 · 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의 · 약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화장품을 지정 · 공인 · 추천 · 지도 · 연구 · 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 · 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하여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래 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고, 연구자 성명 · 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 [별표 1] 화장품 표시·광고의 표현 범위 및 기준

구 분	금 지 표 현
특정인 또는 기관의 지정, 공인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OO 아토피 협회 인증 화장품· OO 의료기관의 첨단기술의 정수가 탄생시킨 화장품· OO 대학교 출신 의사가 공동 개발한 화장품· OO 의사가 개발한 화장품· OO 병원에서 추천하는 안전한 화장품· 병원용, 병원전용, 피부과전용, 피부과시술용, 약국용, 약국전용 화장품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제4호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 · 광고 행위 등의 금지)

4.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2. 화장품 표시 · 광고 시 준수사항

아. 품질 · 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 · 광고를 하지 말 것

구 분	금 지 표 현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 부작용이 전혀 없다.· 먹을 수 있다, 일시적 악화(명현현상)가 있을 수 있다, 지방볼륨생성, 보톡스, 레이저, 카복시 등 시술 관련 표현	
	· 체내 노폐물 제거	단, 피부·모공 노폐물 제거 관련표현 제외
	· 필러(filler)	단, (색조 화장용 제품류 등으로서) '채워준다', '연출한다'는 의미의 표현을 함께 나타내는 경우 제외

(서울청) 특정 성분이 피부 표피층(각질층 포함)이 아닌 피부 진피층, 인체 장기, 뼈, 근육에 전달되는 표현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제4호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4.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2. 화장품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

사.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구 분	금 지 표 현	
인체 유래 성분 관련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특정인의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기원 표현인체에서 유래한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예시> 줄기세포 화장품, stem cell, ○억 세포 등인체에서 유래한 특정성분(엑소좀, 리포좀 등)이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예시> 엑소좀 화장품, 엑소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별표 3]에 적합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만 불특정인의 '인체세포·조직 배양액' 표현 가능식물 등 인체 외에서 유래한 경우에는 제외<예시> 우유 엑소좀, 식물 엑소좀 등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제4호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4.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2. 화장품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

자.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도안·사진 등을 이용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 [별표 1] 화장품 표시·광고의 표현 범위 및 기준

구 분	금 지 표 현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 여성크림, 성 윤활작용, 쾌감을 증대시킨다,질 보습, 질 수축 작용·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시 및 광고- 성기 사진 등의 여과 없는 게시, 남녀의 성행 위를 묘사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단, [별표2] 1.에 해당하는 표현은 제외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제4호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 · 광고 행위 등의 금지)

4.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2. 화장품 표시 · 광고 시 준수사항

사.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를 하지 말 것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 [별표 1] 화장품 표시·광고의 표현 범위 및 기준

구 분	금 지 표 현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가 사실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제품 사용방법을 사실과 다르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예시> 바늘, 니들, 마이크로니들, 미세침, MTS(Microneedle Therapy System), 외음부세정제의 '이너케어', '질 내 주입/사용' 등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제4호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4.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2. 화장품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

사.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 [별표 1] 화장품 표시·광고의 표현 범위 및 기준

구 분	금 지 표 현
그 밖의 기타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동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인증을 받은 제품임원료 관련 설명 시 완제품에 대한 효능·효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피부 나이 n(세 등 기간을 의미하는 단위) 감소 또는 어려진다는 표현 <예시> 피부나이 10년 감소, 피부나이 5세 어려짐, 피부나이 -3살 등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준수사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준수사항)

3.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록서(전자문서 형식을 포함한다)를 보관할 것
4. 화장품의 제조를 위탁하거나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제조업자에게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제조 또는 품질검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탁자에 대한 관리 ·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받아 유지 · 관리하고, 그 최종 제품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감사합니다.



“청렴한 식약처 국민 안심의 시작”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란?

- 공익신고자(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는 제도

◆ 보호조치 요구 방법

우편(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청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전화 044-200-7773/팩스 044-200-7949